

의안번호	2122205
의 퇴 인	윤재옥 의원
회 답 일	2023. 7. 27.
추계번호	23B2318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에 1억 1,000만원, 2028년에 1억 1,0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5,000만원(연평균 1억 1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평균
실태조사의 실시 (안 제6조제1항)	110	110	110	110	110	550	110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3.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1항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, 공정채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제2항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인자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5조제3항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게 공정채용에 관한 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6조제1항 (실태조사의 실시)	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채용정책 추진과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관련 현황, 구직자, 구인자 및 국민의 인식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확산 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7조(기초 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)	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3조제1항 (보고 및 조사)	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인자, 구직자 또는 채용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.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.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자료 제출의 명령	재량규정
7	안 제23조제2항 (보고 및 조사)	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·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6조(권한의 위임)	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제1항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—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임
2	안 제5조제2항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×	구인자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관련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3	안 제5조제3항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×	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게 공정채용에 관한 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관련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
4	안 제6조제1항 (실태조사의 실시)	0	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
5	안 제17조(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)	—	현행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)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하지 않음 ※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2023년 현재 기준 관련 지침 및 채용절차법 관련 지도·점검을 통해 표준 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, 현행법과 동일하여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추가재정소요 발생하지 않음
6	안 제23조제1항 (보고 및 조사)	—	개정조항은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7	안 제23조제2항 (보고 및 조사)	—	개정조항은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8	안 제26조(권한의 위임)	—	개정조항은 개정안에 따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변경되므로, 추가재정소요 발생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서는 재정수반조문 중 추계가 가능한 안 제6조제1항(실태조사의 실시)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산출
- 실태조사의 실시(안 제6조제1항)
 -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정채용정책의 추진과 공정채용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연구용역(‘공정채용 정책 현장 실태 및 정책 이슈 분석’)을 준용하여 산출
 -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확산 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(2020년 기준 1억 1,000만원/회)의 단가를 토대로 산출
 -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공정채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실태조사의 실시 (안 제6조제1항)	110	110	110	110	110	550	110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4.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에 1억 1,0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5억 5,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
실태조사의 실시 (안 제6조제1항)	110	110	110	110	110	550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 직무대리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계남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[참고자료]

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○ 참고로 2023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임

- － 공정채용 인프라구축사업: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(38억 2,500만원),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·보급(14억원), 공정채용제도 활용지원(10억 1,600만원), 공정채용 매뉴얼 마련(5억원), 공정채용 홍보(5억원) 등 총 72억 4,100만원의 예산요구안을 편성(2024년 기준)

구분		現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	改 「공정채용에 관한 법률」
총칙	제명	· 채용 투명성 강화, 부정채용금지 신설,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 ⇒ 「공정채용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	
	목적	· 채용서류 반환,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, 구직자 부담 완화	· 공정성 확보 및 지원 ⇒ 구직자 권익 보호 및 공정 · 투명한 채용질서 확립
	지원	<신설>	· 국가·지자체의 지원 근거, 실태조사 등
채용 공정성	채용 강요 금지	· 법령을 위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·강요 ⇒ 3천만원 이하 과태료 · 금품 등 제공 · 수수 ⇒ 3천만원 이하 과태료	· 법령을 위반한 부정한 청탁·알선 ⇒ 1천만원 이하 과태료 · 금품 등 제공·취득, 약속 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· 장기근속자 등의 친족 우선 채용 요구 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· 사업의 정상적 운영 방해, 협박·강요 ⇒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	부정 채용 금지	<신설>	·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 수행·지시 － 명단 별도 관리 ⇒ 1천만원 이하 과태료 －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채용관여자에게 알림 ⇒ 1천만원 이하 벌금 －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 채용과정 운영 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－ 점수·순위 등의 조작 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	후속 조치	<신설>	· 부정채용 행위의 유죄판결 확정 ⇒ 부정채용과 직접 관련되어 합격한 자에 대한 채용 취소 가능

구분		現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	改 「공정채용에 관한 법률」
채 용	채용 광고	<신설>	· 채용광고에 수행 예정 직무, 근로조건 등 의 구체적 제시 노력
	채용 일정 안내	· 채용일정, 심사지연 사실, 채용과정 변경 등 고지(제재 無)	· 채용일정, 심사지연 사실, 채용과정 변경 등을 지체없이 고지 ⇒ 시정명령, 불이행 시 과태료 3백만원
	수집 금지 정보	· (단계) 채용서류상 수집 금지	· (단계) 채용서류 + 면접에서 수집 금지
투 명 성	변경 사항 고지	<신설>	·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내용·사유 고지 ⇒ 과태료 300만원
	채용 결과 고지	· 채용 대상자 확정 시 지체없이 채용여부 고지 ⇒ 제재 無	· 채용 대상자 확정 시 지체없이 채용여부 고지 ⇒ 시정명령, 불이행 시 과태료 3백 만원
		<신설>	·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 고지 노력
기 타	신고자 보호	<신설>	· 법 위반 지시를 거부한 자,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처우 금지 ⇒ 2년 이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자료: 고용노동부